개선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자산운용

2. 조치일 : 2024. 1. 30.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4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불합리

회사는 검사착수일(2023.9.14.) 현재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32개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현황과 맞지 않거나 임계치 부적정 등 추출기준이 불합리하게 운영됨에도 추출기준 신설 이후 개정 내역은 단 1건에 그쳤다.

또한 자동화된 추출기준에 의해 적출될 수 없는 금융사고 등의 경우에 의심거래를 임의보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거래 경보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 담당자의 보고여부 검토가 지연되어 종결 처리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임의보고 절차를 수립하는 한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기간 검토를 방치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2) 고객확인 및 고객위험평가 체계 미흡

㈎ 고객확인 업무 미흡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와 방법을 업무지침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내규에 고객의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 검증서류 등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일부 법인의 신원확인 시 위임관계 서류를 미징구하거나, 시간이 경과한 지분관계 자료를 사용하는 등 고객확인 업무를 미흡하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업무지침에 고객확인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내용을 반영하는 등 고객확인 업무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위험평가 체계 미흡

회사는 고객위험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위험평가 세부 구성 항목, 가중치 등에 대한 내부 업무처리 지침이 부재하고, 모든 고객의 위험도가 동일하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검사 대상 기간 중 고객위험평가 모형의 구성 항목 및 가중치 등에 대해 유효성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고객위험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 업무지침을 정비하고 고객의 위험도가 적정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위험평가모형의 실효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상품등 제공 전 위험평가업무 운영 불합리

회사는 상품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품을 대상으로 신규 상품 출시 전 자금세탁행위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있다. 위험평가 시 회사는 상품 운용구조 측면만을 중심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투자대상에 대한 자금세탁행위 관련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모든 상품을 동일한 위험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현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신규 상품 출시 전 자금세탁위험 평가 기준은 지나치게 단순하여 위험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회사는 자금세탁위험 측면에서 신상품을 정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자금세탁위험 평가가 되도록 평가기준을 구체화하여 신상품 위험 평가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4) 독립적 감사 업무 운영 불합리

회사는 내규에 따라 연 1회 이상 독립적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독립적 감사 결과 중 일부 내용을 이사회 보고 시 누락하거나, 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활동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개선 활동을 포함한 독립적 감사 결과를 누락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독립적 감사 결과 보고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